

위원회 설치 규정

- 제 1 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적용범위)**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및 학칙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 3 조 (설치)**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[별지 서식 제1호]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,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획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해당 부서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.(개정 2017. 11. 1)
- ② 기획처장은 위원회의 설치여부를 심사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설치가 승인된 위원회의 해당 부서장은 규정 등 관리·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규정을 입안하여야 한다.(신설 2017. 11. 1)
- 제 4 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개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까지로 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.
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개별 규정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5 조 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 6 조 (보고)**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 7 조 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 8 조 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부서의 직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- ① 이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11. 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별지 서식 제1호〉 위원회 설치 요청서(신설 2017. 11. 1)

위원회 설치 요청서			
위원회 명칭		주관부서	
위원회 목적 및 기능			
위원 구성			
기타 사항			

위와 같이 위원회 설치를 요청합니다.

20 . . .

소속부서장 :

(인)

호서대학교 총장 귀하